

최근 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의 주요내용

I. 머리말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¹⁾(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한다)이 2009년 6월 10일 개정·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개정경과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독점금지법 개정의 경과 및 개요

일본의 개정 독점금지법은 2005년 7월 26일 개정·공포된 이래 4년 만인 2009년 6월 10일

다시 개정·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개정된 부분(본고 VI의 1.항 내지 5.항)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과징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카르텔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시켰고,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시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단체의 신고제 폐지, 해외당국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근거규정, 이해관계인의 심판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의무적 구의견제도의 임의화,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22年4月14日法律第54号).

Ⅲ. 과징금 제도의 개정

1. 과징금 대상의 확대

구법하에서는 카르텔 및 지배형 사적독점²⁾에 과징금을 과했으나 신법하에서는 배제형 사적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의 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도 과징금이 과해지게 되었다.

(1) 배제형 사적독점

① 배경

배제형 사적독점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의 성질이 카르텔이나 지배형 사적독점과는 다르지만, 경쟁자를 배제하여 부당히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이상 이것을 과징금으로서 제재할 필요성은 카르텔과 다를 바 없다는 고려하에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② 신법의 내용

배제형 사적독점에 관해서 신법은 과징금의 요건으로서 대가에 영향을 줄 우려를 요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배제형 사적독점 행위의 전부가 과징금의 대상으로 된다.

(2)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① 배경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쟁감쇄형」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다. 이는 어느 행위태양이 소정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 의해 경쟁을 감쇄할 우려가 인정될 때 비로소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과징금이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제계 및 각 정당으로부터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었다.

② 신법의 내용

과징금의 대상이 된 각 유형에 관하여 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다.

가.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법 제20조의 4, 제2조 제9항 제3호)



2) 일본의 '사적독점'은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지배형'과 '배제형' 사적독점이 있다. 지배형 사적독점은 사업자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식취득 등에 의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배제형 사적독점은 사업자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하여 부당한 저가 판매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상대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여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가격차별

부당하게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서 차별적 대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과하고 있다(법 제20조의 3, 제2조 제9항 제2호)

부당염매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요건으로 함에 대하여 본 가격차별은 「부당히」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 입증책임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부당염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함에 반하여 가격차별은 부당함에 대한 입증은 공정위가 해야 한다.

본 가격차별행위는 위 부당염매행위를 보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염매와 같이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요건을 가중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며,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쟁자와 공동하여 1) 어느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을 거절 또는 공급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자에게 어느 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게 하거나 공급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게 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과하고 있다(법 제20조의 2, 제2조 제9항 제1호). 이 경우에도 「공급하는」 것

을 거절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공급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1) 판매하는 당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것을 유지케 하고, 상대방의 당해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상대방이 판매하는 당해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의 당해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당해상품의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법 제20조의 5, 법 제2조 제9항 제4호).

마. 공동의 요건위반행위의 반복

위와 같은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의 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는 어느 것이나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을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예방적 규제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과징금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업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경우에 위반행위의 반복이라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유형이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받은 것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10년은 신법 시행 전에 소급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우월적 지위의 남용

① 배경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는 위반행위자에 부당한 이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에 더하여 과징금을 과하여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공정위도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를 과징금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표명하여 왔으며 이것이 입법화된 것이다. 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위반행위의 직접피해자에 대한 직접 경제상의 이익을 반환케 하는 방법이 지적되었으나 본 개정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② 신법의 내용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한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상의 상관습에 비추어서 부당히 1) 계속하여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게 한 때, 2) 계속하여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전, 서비스, 그밖에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 때, 3)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에 관한 상품의 수령을 거절,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상품을 수령한 후 당해 상품을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대가의 지불을 늦추게 하거나, 금액을 깎아 다른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법 제20

조의 6, 제2조 제9항 제5호).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관해서는 당해행위를 계속한 경우만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부당염매보다는 적었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반복」까지는 요하지 않고 「당해행위의 계속」(행위의 확장) 정도만으로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였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1) 배제형 사적독점

배제형 사적독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기간에 있어서 일정의 매출액에 대하여 6%(위반사업자가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2%, 도매업의 경우에는 1%)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법 제7조의 2 제4항). 위반행위기간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이지만, 당해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으로 한다.

(2)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의 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의 거래거절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기간에 있어서 위반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의 3%(위반사업자가 소매업의 경우에는 2%, 도매업의 경우에는 1%)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법 제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5).

한편, 배제형 사적독점과 같이 경과조치로서 신법 시행 전부터 신법 시행 후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과징금의 대상은 신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한한다(부칙 제5조).

(3) 우월적지위의 남용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기간에 있어서 일정한 매출액에 대한 1%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과한다(법 제20조의 6).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들 매출액 또는 구입액의 합계를 한다.

구법 및 신법에 있어서 과징금 대상행위 및 과징금 산정률에 관한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3. 실무상 포인트

본 개정에 의해 과징금의 대상에 추가된 행위

유형 중 부당염매, 가격차별, 공동의 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해서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과징금이 과하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배제형 사적독점에 관해서는 최근 사건수가 많아졌고, 이에 과징금이 과해짐으로써 실무상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해서는 「계속성」이 요건으로 되지만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는 계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실무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과징금을 과하는 구조의 개정

(1)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산

신법은 카르텔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률을 15%(소매업은 4.5%, 도매업은 3%) 가중하였다(법 제7조의 2 제8항).

<표 1> 과징금 대상행위 및 과징금 산정률

〈구 법〉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카르텔	10%(4%)	3%(1.2%)	2%(1%)
지배형 사적독점	10%	3%	2%
〈신 법〉			
배제형 사적독점	6%	2%	2%
부당염매, 차별가격, 공동의 거래거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	2%
1%	우월적지위의 남용	1%	

(2) 과징금 감면제도의 확충

① 기업 그룹에 의한 공동신청

신법은 모자회사가 공동으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회사로 취급한다(법 제7조의 2 제13항). 기업 그룹에 의한 공동신청을 인정함으로써 과징금 감면신청을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② 감면신청자수의 상한의 확대

신법은 구법에 있어서 3개사인 과징금 감면자수의 상한을 5개사로 확대하였다. 다만, 4번째 및 5번째의 신청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내용이 종전에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던 사실에 관계된 경우에는 과징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법 제7조의 2 제11항 3호).

③ 합병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명령의 상대방의 명확화

가. 합병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

신법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을,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분할에 의해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을 승계한 법인사업자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양도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를 시정명령의 대상자로 하고 있다(법 제7조 제2항).

나. 합병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대상자

신법은 과징금납부명령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를 한 법인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후에 자회사에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분할에 의해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게 하거나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공정위는 당해 자회사에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의 2 제25항).

(3)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한 제척기간의 연장

신법에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해서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법 제7조 제2항, 법 제7조의 2 제27항). 공정위로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종래에는 조사·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실무상의 포인트

기업 그룹에 의한 공동신청 및 감면신청자수의 확대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 감면제도를 의식하여 함께 카르텔에 참가한 다른 회사가 과징금 감면신청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기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제척기간의 연장으로 기업으로서는 이전까지 소급하여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조사의 철저가 요구된다.

IV. 카르텔금지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상향

구법에서는 사적독점 또는 카르텔금지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³⁾(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은 징역형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시켰다(법 제89조 제1항). 벌금액은 변함이 없다. 금융상품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다른 경제관계법령 및 제 외국 경쟁법과 비교하여 형사벌 수준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는 독점금지법위반죄에 대한 형사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되었다.

V. 기업결합규제의 개정

1. 주식취득의 사전신고제 도입

(1) 신법의 내용

신법에서는 회사의 주식취득의 경우에 종래의 사후신고제에서 다른 기업결합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였다. 합병이나 주식보유이나 기업결합의 형식에 따라서 사전, 사후의 취급차이가 특별한 합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서구에서의 기업결합규제(사전신고제)와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① 주식취득회사의 국내매상고 합계액이 200

억 엔을 넘고, ② 주식발행회사의 국내매상고와 자회사의 국내매상고의 합계액이 50억 엔을 넘으며, ③ 주식취득회사가 속하는 기업결합집단이 소유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총주주의 의결권수의 20% 또는 50%를 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2) 실무상의 포인트

구법에서는 주식취득의 경우에 사후보고제이므로 대기기간이 불필요하였지만, 신법에서는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의 대기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조합의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

(1) 신법의 내용

신법에서는 조합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A가 민법상 임의조합인 펀드 X를 통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여기서 조합이라 함은 ① 민법상 임의조합, ②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③ 유한책임사업조합, ④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조합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일본의 엔화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변동환율제에서 계속 변동하고 있으나 평균 엔화:원화가 1엔:10원 정도로 본다.

(2) 신법의 포인트

기업으로서는 자사가 지배하는 펀드를 통하여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자사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그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30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주식취득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신고면제범위의 확대

(1) 신법의 내용

구법에서는 신고의무 면제는 직접의 모회사 및 형제회사간의 결합만에 한정되었으나 신법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손자회사 등 동일기업집단 내의 결합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기업결합집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최종 모회사에 거슬러 올라가 그 산하에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회사로 성립되는 기업군이다. 자회사 여부도 단순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뿐만 아니라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부의 실질적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2) 실무상의 포인트

본 개정에 의해 동일기업 결합집단 내에 속하는 기업간의 재편성 행위는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동일기업 그룹 내에서의 M&A라면 대기기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보다 신속히 재편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VI. 그 밖의 개정 내용

1. 해외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의 도입

공정위는 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주고, 일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경쟁당국에 대하여서 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제43조의 2 제1항). 다만, 상호주의, 비밀성 담보, 목적외 사용의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글로벌한 사업전개에 의해 각국 경쟁당국의 국경을 초월한 카르텔 조사 및 국제적 기업결합시 정보교환 등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각국 경쟁당국의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공정위가 외국 경쟁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거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2. 이해관계인에 의한 심판사건기록의 열람 등사 규정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심판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법 제70조의 15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 공정위는 등사한 사건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70조의 15 제2항).

종래에는 심판에서 독점금지법위반행위의 유무를 다투는 사업자나 공정위에 협력하는 사업자가 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무제한으로 심판기록이 공개되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심판에서의 증거제출이나 공정위에의 조사 및 협력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개정에 의해 공정위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심판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 공정위의 판단으로 제한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수집의 방법이 지금보다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구의견제도의 개정

종래에는 독점금지법위반행위의 피해자가 무과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소는 손해액에 관하여 반드시 공정위에 의견을 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공정위에 대한 재판소의 의무적 구의견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임의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법 제 84조 제1항, 제2항).

4.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상황

공정위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선을 종전에 10만 엔에서 100만 엔으로 상향 개정하였다(법 제93조).

5. 사업자단체 신고제의 폐지

종래에는 사업자단체 즉, 사업자로써 공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2 이상의 사업자의 통합체 또는 연합체는 설립, 변경, 해산시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는 신고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6. 시정명령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침해행위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가능하다(법 제83조의 4 제1항). 이 독점금지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3자가 소지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청구소송의 경우에만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전처럼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독점금지법상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상서류를 소지하는 자에게 무제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의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83조의 4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서류의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소송당사자의 입증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재판소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의 소지자에게 그 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누구도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83조의 4 제2항).

또한 제출된 서류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고 영업비밀에 근거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소송당사자, 대리인, 보조인에게 대해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제한을 명할 수 있다.

Ⅶ. 맺음말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을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속하여 논의와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 부칙 제20조에 의하면 독점금지법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판제도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각 단체에 따라 다른 의견이 많다. 크게 대별하면 (1) 사전심사형 심판방식만을 채용하는 것, (2)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판과 재판소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3) 전문성이 높은 사적독점, 카르텔, 기업결합에 관한 불복은 공정위가 나머지는 법원의 1심판할로 하는 것, (4) 심판절차를 폐지하고 공정위의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모두 지방법원의 취소소

송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개정의 스케줄은 공정위원장이 2009년도의 171회 국회에서 2010년의 통상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심판제도의 전면 개정에 의한 실무상의 영향이 크므로 개정의 검토상황을 이 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平成21年改正独占禁止法のポイント(2009年, 商事法務).
2. 平成21年改正独占禁止法の解説と分析(2009年, 商事法務).
3. 日本公正取引委員会 (<http://www.jftc.go.jp/dk/h21kaisei/h21kaisei.html>).
4. 逐条解説・平成21年改正独占禁止法－課徴金制度の拡充と企業結合規制の見直し等の解説 逐条解説シリーズ(2009年, 商事法務).

임 동 번

(일본주재 외국법제조사원)